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7.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442호로 2021년 12월 16일 유승용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조례의 합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개정 전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을 변경함.
  -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생략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후 2022.1.13. 시행일에 맞춰 별도의 내용 변경 없이 영등포구의회 소관 3개의 조례에서 상위법을 단순 인용하는 조문을 일괄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2021.1.12. 전부개정, 2022.1.13. 시행)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전부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 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도 전부개정되어 2021. 12. 16. 공포되었음.

## 6. 개별 조례별 개정 내용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전의 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과 영의 조문별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현 행 법	개 정 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생략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 ⑦ 현행과 같음

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④  
현행과 같음

**제126조(직속기관)** 현행과 같음

**제127조(사업소)** 현행과 같음

**제128조(출장소)** 현행과 같음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 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 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

**제129조(합의제 행정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② 현행과 같음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 권한)** 현행과 같음

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0조(하부 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4조(하부 행정기구)** 현행과 같음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현 행 영	개 정 영
<p><b>제46조(제척과 회피)</b> ①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p>	<p><b>제49조(제척과 회피)</b> ① ~ ④ 현행과 같음</p>

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47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주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생략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 제15조는 겸직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제4항을 신설하여 의장이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음. 이는 법 제43조제4항에 지방의회의 의장이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위임한 조문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법과 영 개정에 따라 개정 전의 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과 영의 조문별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현 행 법	개 정 법
<p>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 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p> <p>1. ~ 9.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 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p> <p>1. ~ 9.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 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u></p> <p>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 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 을 사임하여야 한다.</p> <p>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하 다)한 기관·단체</p> <p>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단체</p> <p>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 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 는 기관·단체</p>

-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 제4조는 개정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여비의 지급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 그 밖에 법과 영 개정에 따라 개정 전의 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과 영의 조문별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현 행 법	개 정 법
<p><b>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b></p> <p>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p> <p>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p> <p>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p> <p>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p> <p>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p>	<p><b>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b></p> <p>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p> <p>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p> <p>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p> <p>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p> <p>② <u>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u></p>

<p>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생략</p> <p><b>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b>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li> <li>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li> <li>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li> <li>4. 제명</li> </ol> <p>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u>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b>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b> ·② 현행과 같음</p>
--	---

현 행 영	개 정 영
<p><b>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b>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li> </ol>	<p><b>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b>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li> </ol>

<p>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p> <p>2. <u>여비</u>: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 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p> <p>3. <u>월정수당</u>: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p> <p>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p>	<p>하여 지급할 것</p> <p>2. <u>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u>: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p> <p>3. <u>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u>: <u>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 범위에서 지급할 것</u></p> <p>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p>
--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군·자치구의회의원	

비고

1.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시·군·자치구의회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군·자치구의회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개정사항을 우리 의회 조례에 적기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